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71

발의연월일: 2025. 3. 21.

발 의 자:신장식·정춘생·김선민

김남근 · 김한규 · 황운하

강경숙 • 차규근 • 김준형

김재원 • 박은정 • 백선희

이해민 · 서왕진 · 김주영

한창민 · 민병덕 · 정태호

윤건영 · 강준현 의원

(20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OECD 평균인 11.4%를 크게 상회하며 회원 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에는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와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며,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6 및 제4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3호) 및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9호)의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6의 제목 중 "고용형태 현황"을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등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으로 하며, 같은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에는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와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한다.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했 개 정 아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제15조의6(고용형태별・성별 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 용현황 등 공시) ① -----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후 로자(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단 신설>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 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등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 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고용형태별・성별 고 용현황-----경우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 황에는 직종·직급·직무·근 속연수 · 고용형태별 근로자 성 비와 직종・직급・직무・근속 연수 · 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1. ~ 3. (생 략)

② (생 략)

제42조(과태료) ①
1. 제1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 으로 공시한 자
- 2. \sim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 ② (현행과 같음)